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2023. 2. 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3-9
----------	------

2023. 2. 9.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고병준 의원 외 7인
- 나. 제 안 일 : 2023. 2. 1.
- 다. 회 부 일 : 2023. 2. 6.

2.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의회 체험 활동을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안됨.

3. 주요내용

- 청소년의 정의를 정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의회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 2) 「청소년 기본법」 및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기타
 - 입법예고 : 2023. 2. 1.~ 2. 5.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의회 체험 대상에 있어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정된 것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확대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차별 없이 지방자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음.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2조제1호 청소년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서 기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정된 사항을 ‘대안교육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의회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시행하는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청소년의 교육복지 차원에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보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안되었음.
-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는 모의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음.

<표.1 마포구의회 모의의회 실시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실시 횟수	2회	1회	1회	
참여 학교	2개교	1개교	5개교	
참여 학생	65명	23명	27명	
지출 예산	312천원	-	94천원	간식비

- 개정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교육복지¹⁾ 기회 제공을 위해 ‘대안교육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으로 추가한 사항으로 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복지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판단됨.
- 다만, 청소년 의회체험이 차별적 교육복지가 아닌 보편적 교육에서 발전된 특성화적 교육의 성격을 담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개정 후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동기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제고될 수 있을지를 재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상기 사항의 보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사업 계획시 의회 체험 대상자들의 소속별, 학년별, 연령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의회 체험 내용의 세밀한 구성으로 사업 추진의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2조

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관 계 법 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